제 2 호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양정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6년06월29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 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 소	신고사항
유**	유** 1974-10-25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6길	재등록
정**	정** 1981-06-16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2항).

(담당자 : 강정 문의전화 : 052-287-0507)

2016년 06월 16일

양정동장 인